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93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백선희 · 이수진 · 김 윤
서왕진 · 강경숙 · 김재원
황운하 · 박희승 · 이학영
차규근 · 서미화 · 박은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키오스크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주문 · 이용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최신 기기 사용법이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항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를 “제1항에 따른 서비스·보호조치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u><신 설></u>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u>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u>③</u> ----- 제1항 및 제2항----- ----- ----- -----.
<u>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u> 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u>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보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교육</u> ----- -----.